제852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안 (경찰청)	1.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와 탄약의 지급제한(회수) 사유 및 통지의무 신설(신설) ○ 무기와 탄약 지급제한(회수) 요건으로 ①정신질환자 및 ②그 밖에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추가 ○ 무기·탄약 지급제한(회수) 시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·탄약 지급제한(회수) 사유 통지 및 7일 내 관할 경찰서장 통보 ▶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	1.비중요
2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(경찰청)	1.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점 규정 신설(신설) ○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(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) 운전자에 대해 벌점 10점 부과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	1.비중요
3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(강화) ○ 지자체 뿐만 아니라, 국가·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▶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2.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 의무자의 사망, 납부 의무 법인의 소멸 시 납부 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(신설)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자의 사망이나 체납 법인의 합병 시, 상속재산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▶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식품위생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, 연장 및 지정취소 등 근거 신설(신설) ○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법률로 상향, 교육역량을 갖춘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지정범위 마련 ○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, 평가를 통하여 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 ○ 정기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(지정취소·업무정지 및 시정명령)의 법적 근거 마련 ▶식품위생법 제41조의2,제41조의3제41조의4 2.먹는물 부적합 통보 의무 근거(신설) ○ 식품 영업자가 의뢰한 식품용수(지하수)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약처장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 규정 마련 ▶식품위생법 제46조의2 3.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기관 지정,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(신설) ○ 교육기관 지정방식을 기존 규정에 의한 지정에서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지정제로 전환 등 ○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, 평가를 통하여 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	1.중요 2.비중요 3.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정기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(지정취소·업무정지 및 시정명령)의 법적 근거 마련 ▶식품위생법 제56조 4.영업허가 취소 등 근거 규정(신설) ○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처분기준 근거 규정 신설 ▶식품위생법 제75조	
5	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 (소방청)	1.소방청 통보 대상 감염병(신설) ○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원숭이두창 감염병환자 또는 의심환자인 경우 소방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▶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종류 고시 제2조	1.비중요